

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 방역 수칙

2021. 5.

교 목 부

1 기본 방역 수칙

-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**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**가 무엇보다 **중요**
-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아래의 **중요 수칙 메시지**를 항상 명심하고, **코로나19 감염 예방**을 위해 노력

【중요 수칙 메시지】

- (제1수칙)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
- (제2수칙)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
- (제3수칙)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
- (제4수칙) 밀폐 시설·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
- (제5수칙)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말없이 하기

- 체류 자격, 국적에 관계없이 **아래의 검사 대상자**는 **무료로 코로나19 검사**를 받을 수 있으며, **국내감염***의 경우 **치료비 및 격리비용도 무료****이므로, **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** 필요

* 해외 유입(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)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전액 지원, 일부 지원, 미지원으로 구분

** 방역수칙 위반, 격리장소 변경 명령 불이행 등 개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및 격리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
<코로나19 무료 검사 대상자>

의사 환자	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조사 대상 유증 상자	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
	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	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주요 임상증상 : 발열(37.5°C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	

※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, 역학적 연관성, 증상 유무,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(별도공지 시 까지, 외국인도 가능). 무료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위치는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 또는 관할보건소로 문의 ▶ 수정근거: 중앙방역대책본부-7055(2021.4.8.)호

- *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(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)
- ① 가족(동거인)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
 -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(동거인), 친구, 지인과 접촉한 경우
 -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
 -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

2 등교 수업 시

- (등교 전)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, 지도교수,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, 국제처 직원 등에 연락
-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료·검사
 - ※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 또는 관할보건소 문의 후 방문,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
-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
-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지도교수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, 국제처 직원에게 알린 후 등교
 - ※ 38℃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에 재방문

다음의 경우 등교 중지

-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
 -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
 - ※ 다만,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'즉시' 별도 시설에서 격리를 함에 따라 본인과의 접촉이 없었던 경우 등교 가능
 - ③ 본인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,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
- (등교 시) 학교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, 강의실에서도 띄어앉기 등을 통해 거리두기 시행
 - 식사를 동반하는 모임(유학생회, 동아리 등)은 최대한 자제하고, 수업이 끝난 후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가급적 즉시 귀가

- (등교 후)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지도교수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, 국제처 직원에게 연락
-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·검사하고, 검사 결과가 나온 즉시 지도교수 또는 국제처 직원에게 연락

3 일상 생활 시

□ 기숙사 생활 시

- 기숙사 생활 시 항상 손 씻기, 손 소독 등을 통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
- 기숙사 내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 간, 층 간 및 호실 간 이동은 자제하고, 특히 방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행위는 금지
- 2인 이상이 1개의 방을 사용하는 경우 방 안에서 대화를 자제하고,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시행
- 방 밖을 벗어난 경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, 공용공간(조리실, 세탁실, 화장실)은 혼잡하지 않도록 이용시간을 분산하여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
- 공용 공간에서는 음식 섭취, 대화, 전화 등 비말 발생이 가능한 행위는 최대한 자제
- 특히 기숙사 내 취사가 가능한 경우 취사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, 식사는 개별 방 또는 칸막이가 설치된 식당에서 실시
-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
-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기숙사 관리자에게 알리고,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
 - ※ 기숙사 관리자는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독립공간에 머물도록 하고,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, 보건소 연락 후 지시에 따라 조치

□ 학교 밖에서 공동 생활 시

- 외출 후에는 항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**코로나19 감염 예방**을 위해 노력
-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**방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**하고, 대화 자제
 -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·검사
- 함께 음식을 조리하여 먹는 경우 **취사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**하고, **따로 식사하기, 음식 덜어먹기, 식사 중 대화 자제** 등을 통해 비말을 통한 **감염 가능성 최소화**
-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환기가 어려운 경우 **매일 3회 이상** 주기적으로 환기

□ 동아리, 종교 활동 등 소모임 행사 시

- 온라인 등 비대면·비접촉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, 발열, 호흡기 증상 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경우 **이용 자제**
- 입과 코를 가리고 항상 **마스크를 착용**하며, 출입 시 **증상 여부** 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**확인** 및 **명부**(전자 또는 수기) **기록 관리**(4주 보관 후 폐기) 등 방역에 **협조**
- 좌석 간격 등 다른 사람들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유지
- 합창 등 노래를 부르거나(성가대, 합창단 등), 큰 소리로 말하거나 기도하는 등 **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하지 않기**
- 식당 외 장소에서 음식 섭취는 엄격히 제한하고, **공용물품**(수건, 컵 등) **사용 제한** 및 **개인물품 사용**
- **접촉·대면 모임 및 행사**(수련회, 캠프, 종교 소모임 등)는 **자제**하고,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

4 시간제 취업 시

□ 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규정

- 유학생의 영리,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, **시간제 취업허가**를 **사전에 받은 경우**에 한하여 허용
 -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(단순 노무 등) 활동에 한하여 허용하며,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**제조업 및 건설업, E1~E7 전문분야 및 E-9, E-10 분야는 허가 제한**
 - ※ 전문분야(E1~E7)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며,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능력 TOPIK 4급(KIIP 4단계 이수)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 허용
- 표준근로계약서, 사업자등록증, 대학 담당자의 시간제취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

【허가절차】



-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,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허용
 - **(학위과정 유학생, D-2)**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 (2.0) 이상이며, TOPIK 3~4급(KIIP 3~4단계 이수)* 이상 자격증 소지자
 - * **시간제 취업 허가를 위한 한국어 능력 요건**
 - 전문학사 및 학사 1~2학년 : TOPIK 3급(KIIP 3단계 이수) 이상 소지
 - 학사 3~4학년 및 석·박사 : TOPIK 4급(KIIP 4단계 이수) 이상 소지
 - 영어트랙과정의 경우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 상당의 어학능력 소지
 - **(어학연수과정, D-4)**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**90% 이상**이며, **TOPIK 2급**(KIIP 3단계 이수) 이상 자격증 소지자
- 과정별로 주당 허용된 시간 내에서만 시간제 취업 가능
 - ※ 한국어,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재학 여부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시간 규정의 1/2 범위 내에서만 허용

- (어학연수과정)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)
 - 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이며, 입국 후 6개월 경과 후 시간제 취업 가능
- (학부과정)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)
 - 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은 무제한(주당허용시간 산정시 제외)
- (석·박사과정) 주당 25시간 이내(인증대학은 주당 30시간 이내)
-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강제퇴거, 시간제취업허가 제한 등 조치 가능
 - ※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 명령

□ 시간제 취업 시 방역 수칙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고, 근무 중 발열,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
 - 귀가 후 건강상태를 확인하며, 의심증상 지속 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·검사, 검사 사실에 대해 지도 교수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, 국제처 직원에게 연락
 - ※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 또는 관할보건소 문의 후 방문,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
-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,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 및 주기적인 손 씻기·손 소독 등 시행
-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침방울이 튀는 행위(큰소리로 대화, 불필요한 대화, 통화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
- 공용 물품이 아닌 개인 찻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고, 개인별 작업복 등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인과 공유 금지
- 자주 사용하는 사무기기(전화, 헤드셋, 마이크 등)에 1회용 냇개 사용 또는 주기적 소독 실시
-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, 덜어먹기를 위해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
-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으며, 실내 흡연실 이용은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
-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
- 소규모 모임, 동아리활동, 회식 등은 자제하고, 퇴근 후 즉시 귀가

[참고 : 선별진료소 위치 문의, 통역이 필요한 경우 연락처]

-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),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345), 관광안내센터(1330),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(1577-0071)로 문의

전화번호	운영시간	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	24시간	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345)와 연계
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	24시간	영어, 중국어
	09:00~18:00	일본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인도네시아어, 러시아어, 몽골어, 방글라데시어, 파키스탄어, 네팔어, 캄보디아어, 미얀마어, 프랑스어, 독일어, 스페인어, 필리핀어, 아랍어, 스리랑카어
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	24시간	영어, 중국어, 일본어
	09:00~18:00	베트남어, 태국어, 말레이/인도네시아어, 러시아어
1577-007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	09:00~18:00	베트남어, 필리핀어(영어), 태국어(라오스어), 몽골어, 인도네시아어(둥티모르어), 스리랑카어, 중국어, 우즈베키스탄어, 키르기스스탄어, 파키스탄어, 캄보디아어, 네팔어, 미얀마어, 방글라데시어